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위탁사육에 관한 문제

Q 도로 확장·포장공사로 인하여 저희 농장이 공사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농장은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A 보상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되며 나오게 되는 보상을 그 소유주가 받게 되고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보상은 위탁사육자가 받게 됩니다. 기타 보상을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농장부지 침범 문제

Q 농장부지를 몇 년 전에 사두었다가 최근에 가보았더니, 농장부지에 인접해 있던 주택에서 담을 쌓고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지날 수 있던 밭길을 흙으로 매립해서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을 해놨더군요.

아무리 봐도 저희 땅을 침범한 것 같아 측량을 해보았더니 도로 뿐만 아니라 담의 일부분까지 침범 당했기에 집주인에게 따졌더니 도로는 마을 형성될 때부터 있었던 도로이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는 듯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귀하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잘 안된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 소유 지상의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고발 피해에 관한 문제

Q 저희 농장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이 양어장은 양어장 옆으로 흘러가는 냇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방류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때마다 수질측정을 나와서 측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활성오니로 처리하여 방류를 하고 있고, 그 수치 또한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으며, 측정시마다 기준치 이하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류수 색도가 조금은 진한 편입니다.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로 양돈업을 하기에 많은 규제가 생기고 있어서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과 신고인을 하위고발(?) 등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양어장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일단 귀하께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류수 관리를 지금처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어장도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돈사 근방의 토사 채취작업으로 인한 피해

Q 저희는 산 중턱쯤에 돈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산 주인이 토사 채취업자에게 흙을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공사 동의서에 도장이 필요하다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돈사 주위에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 아직 동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하는지… 피해 예상부분에 대한 관련 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선 동네에 제시한 피해보상액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보상액을 보고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한 돼지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발육장애 등 여러 가지가 걱정됩니다.

A 동의를 하시려면 만일 공사로 인해 돼지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유사산 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보상 단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질병없는 청정농장 내손으로 오늘부터